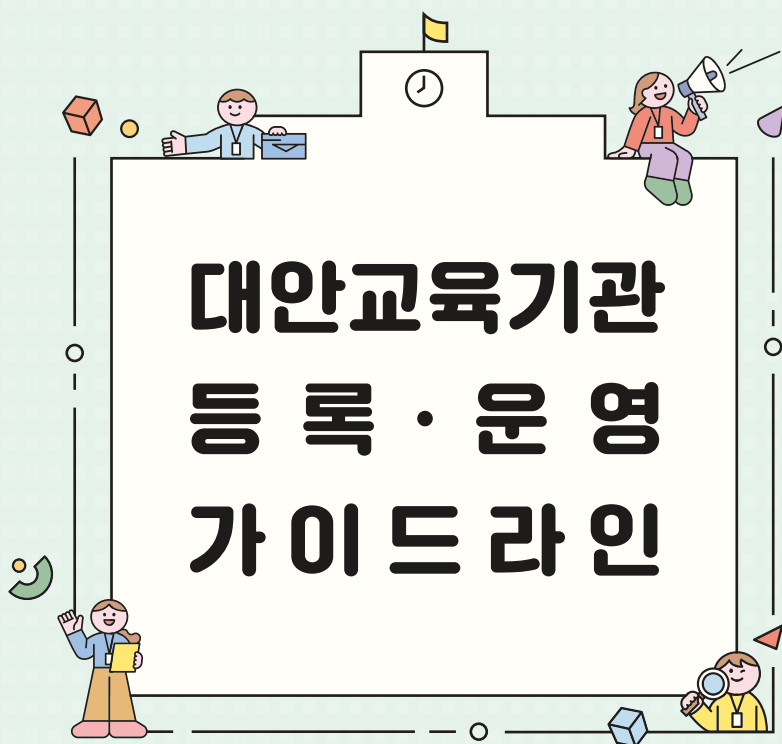






PART I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1.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5
2.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연혁	5



PART II



대안교육기관 등록

1. 등록 요건	10
1) 등록 대상	10
2) 시설 설비 등 등록기준	18
3) 학교 명칭 사용	22
2. 등록 절차	23
1) 등록 신청	24
2) 신청서 검토	28
3) 등록 심의	29
4) 등록 후 후속 조치	31
3. 변경등록	32
1) 변경등록 사항	32
2) 변경등록 절차	32
4. 등록 취소	35
1) 등록 취소 요건	35
2) 등록 취소 절차 및 후속조치	36
5. 폐쇄 신고	38
1) 폐쇄 신고 신청	38
2) 폐쇄 신고 절차 및 후속조치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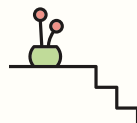


PART III



대안교육기관 운영

1. 안전 관련 책무	41
2. 아동학대신고 책무	42
3. 취학의무 유예	44
4.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46
5. 수업료	48
1) 수업료 책정	48
2) 수업료 반환	48
6. 회계 운용	51
7. 교원의 자격	52
1) 자격요건	52
2)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53





PART IV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56
2.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57
3. 지도·감독	60
1) 지도·감독 실시	60
2) 시정명령	61
3) 과태료	62

부록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65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별첨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83
2. 의견제출서(예시)	84
3.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 기준(예시)	85
4. 대안교육기관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86
5.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예시)	88
6. 2022 개정 교육과정 검정도서 공통 검정기준	96
7.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공고	97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1.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2.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연혁



1.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 또한,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연혁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및 시행(2022.1.13.)



제정이유

- 현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 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지적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와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제5조).
- 다.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제8조).
- 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음(제10조).
- 마.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1조).
- 바.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제14조).
- 사.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제15조).
- 아.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함(제16조).
- 자.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7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 제정(2022.1.11.) 및 시행(2022.1.13.)



제정이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7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의 등록기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록기준(제2조 및 별표 1)
- 나.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
- 라.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제12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2025.1.21.) 및 시행(2025.7.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 사업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5.7.15.) 및 시행(2025.7.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6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보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참고] 대안교육기관 외 대안교육 시행기관

○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거나 제91조에 따라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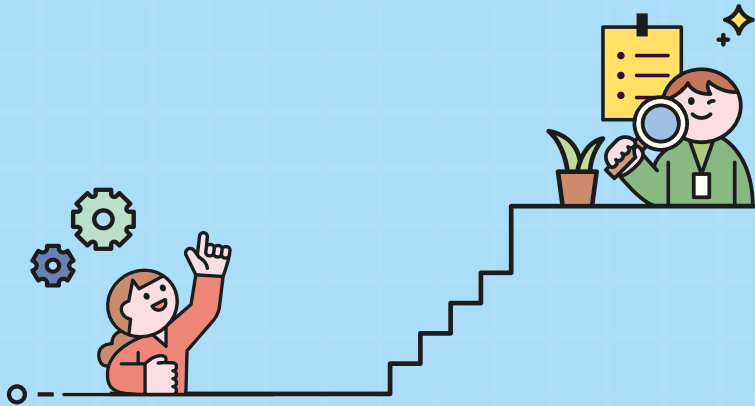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 학생 교육과 제54조에 따른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대안교육기관 등록

1. 등록 요건
2. 등록 절차
3. 변경 등록
4. 등록 취소
5. 폐쇄 신고



1. 등록 요건

1) 등록 대상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제6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등록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등록 제외 시설



-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 「학원법」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한 시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교육의 공공성 및 중립성 등)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 등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함

→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교육을 실시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등록심사 기준 마련 필요(p.11 <예시> 참고)



<예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공공성’ 등록 심사 세부 기준(안)

※ 제시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공공성’ 심사 세부 기준(안)은 여러 시도의 등록 기준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검정도서 공통 검정기준((별첨 6) 참고) 등을 종합하고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예시 자료임.

심사 내용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공공성
심사 자료	•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 교육목표, 학칙,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
심사 세부 기준	• 교육목표의 적정성 및 체계성 - 교육목표가 대안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교육목표가 학칙에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성 여부 - 교육목표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반영·확인되는지 여부 •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사회 보편적 가치 지향 여부 - 교육과정의 수업 목표 및 수업 내용 등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지 여부 •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중립성 여부 -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 - 성에 따른 역할, 장애, 직업 등에 대한 편견을 조정하는 내용, 특정지역 및 국가, 인종, 정당, 종교, 인물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 사회통념 위배 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



●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참고]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2023.9.26. 2020헌바552)

판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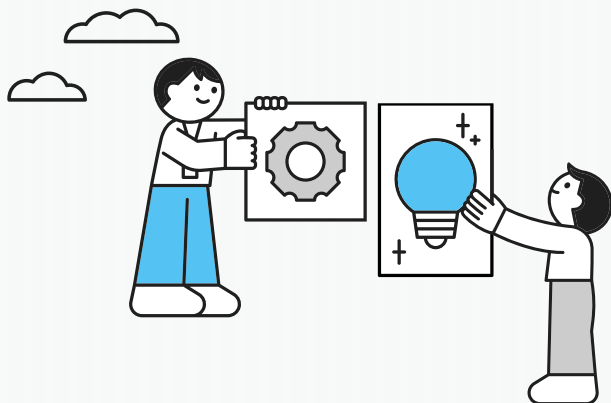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정법에 의하여 미처 구체화되지 못한 사회의 질서를 수용하여 법질서를 보충·구체화하며,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이 공동체의 전체질서 내에서 사적자치를 발현하도록 하고자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해석할 수 있고 '사회질서'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법률행위를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적절하지도 않다.

또한, 문제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 그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 및 이미 구체화된 개별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개별 사례들에 관한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그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써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주관적·자의적 신념이 아닌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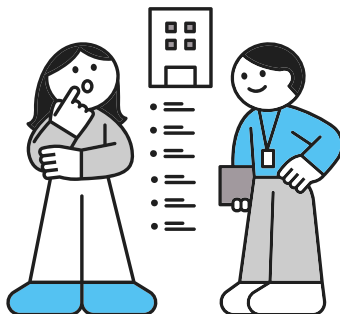


○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으며, 설립·운영하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감은 등록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❶ 피성년후견인
- 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❺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❻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II-1-1) 등록 대상

Q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법인 정관 등의 설립 목적에 “대안 교육 운영”이 꼭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A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는 설립 목적에 “대안교육” 운영과 관련된 목적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유사한 표현의 경우 설립 목적 전체 문장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Q ‘대안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A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을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교육감은 등록 신청기관이 제출한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법」 상 대안교육의 정의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야 함.

Q 대안교육기관이 타 지역에 분교를 운영할 시 분교의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A 대안교육기관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시·도가 아닌 타 지역에 분교 등 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함. 이 경우 기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정원 및 교사 면적과 관계없이 분교의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 면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함.

한편, 대안교육기관이 등록한 시·도교육청의 관할 지역 내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은 기관의 위치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변경등록이 필요함. 만약 분교와 분교의 학생정원이 별도로 관리된다면 각각의 시설이 학생정원 대비 교사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임.

Q 「대안교육기관법」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제2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외국대학 입학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A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시설 등에 대해 신청서류 검토 등의 방법으로 운영 목적 및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등록 불가 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특히, 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령기 청소년의 학습권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금지하는 것임. 교육감은 등록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한 시설 등



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지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기반하여 면밀하게 검토·심의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관련 규정 pp.11~13쪽 참고]

Q 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A 현재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먼저 학원 등록을 말소(폐원신고) 하고, 「대안교육기관법」에서 정한 시설·설비 기준 등 여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해야 함.



Q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 2~3회 정도만 등교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 한가?

A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근거 :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근거 :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하며, '학교'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어(근거 : 「대안교육기관법」 제22조) 학생, 학부모에게 사실상 '학교'로서 인식될 것임. 따라서 정규학교 대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 2~3회만 수업을 실시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Q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

A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근거 :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로 정의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취학의무를 유예하는(근거 :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안교육기관은 20세 미만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0세 이상 성인을 주요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단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20세 이상의 학생이 특정 사유(장애, 중도입국, 학업 지속 등)로 대안교육기관에 다닐 수는 있음.

Q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교육시설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로 설립되는 기관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음. 신규 설립기관의 경우 현재 교육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 등록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A 신규로 설립하는 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신청 서류 검토, 현장실사(시설, 설비 등 교육여건 확인) 등을 바탕으로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등록이 된 이후에 등록 당시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에 따라 교육운영을 하는지 교육청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시설 설비 등 등록기준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1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교사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

▶ 교사의 기준면적¹⁾

학교급	학생수별 기준면적(단위 : m ²)	
초등학교 과정	120명 이하	121명 이하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60명 이하	61명 이하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60명 이하	61명 이하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 비교

- ①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 ②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 가능

-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敎授)·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¹⁾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별표1]

II-1-2) 시설 설비 등 등록기준

Q 교사(校舍)의 면적기준(시행령 별표1)에 옥상, 운동장, 지하층, 기숙사 등이 포함되는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는 교사의 면적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한 기관의 시설 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교육감이 교사 면적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 시설을 판단하여야 함.

참고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서는 교사를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는 교사를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과 별도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서는 교사 기준면적을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이므로, 옥상과 실외 운동장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됨.

Q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있는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 학습에 적합한 시설'이 아닌 경우 등록할 수 없으므로, 교육감은 등록 여부 결정 시 소방관련법·건축법 등 시설·설비와 관련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규정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법령, 건축관계법령 개정 추진 예정

Q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방법은?

A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등
당해연도의 소방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필요.

**Q 등록하려는 기관이 교사를 건축 중인 경우, 교사 완공 전에 조
건부로 등록할 수 있는가?**

A 현행 「대안교육기관법」에서는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
한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등록
하려면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가설 건축물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Q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안교육기관법 시
행령」에 따른 교사를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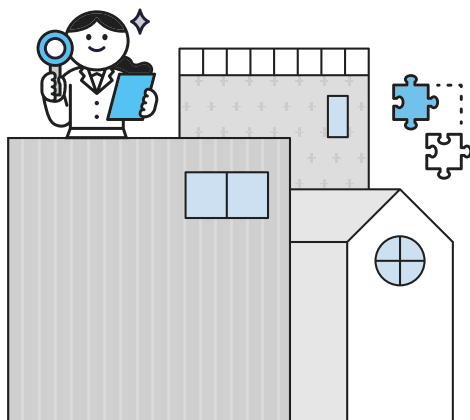
A 교육운영 방식에 관계 없이,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학생 수별 기준면적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Q 학교급별 학생 수에 따른 교실 면적 기준이 있는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는 총 학생 정원별 교사의 기준면적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급별 학생 수에 따른 교실 면적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교육감은 등록심의 시 교사 및 교지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하므로, 현장실사, 신청 서류 검토 등의 방법으로 학급별 정원 대비 교실의 면적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Q 교수·학습 공간과 기숙사 등이 별도의 건물인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A 「대안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시설 및 설비의 위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다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든 교사 및 교지는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해야함.



3) 학교 명칭 사용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22조

-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함

Q&A

II-1-3) 학교 명칭 사용

Q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00초등학교, 00중학교, 00영재학교 등의 명칭도 사용 가능한지?

A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청 등록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구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종류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대안교육기관법」 제22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임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영재학교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영재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이 필요함.

그 밖의 학교 명칭의 경우에도 「대안교육기관법」 및 타 교육 관계 법령,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명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Q 학교명에 '국제'가 들어가도 등록이 가능한가?

A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명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국제'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외국 대학 진학, 외국어 학습 위주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 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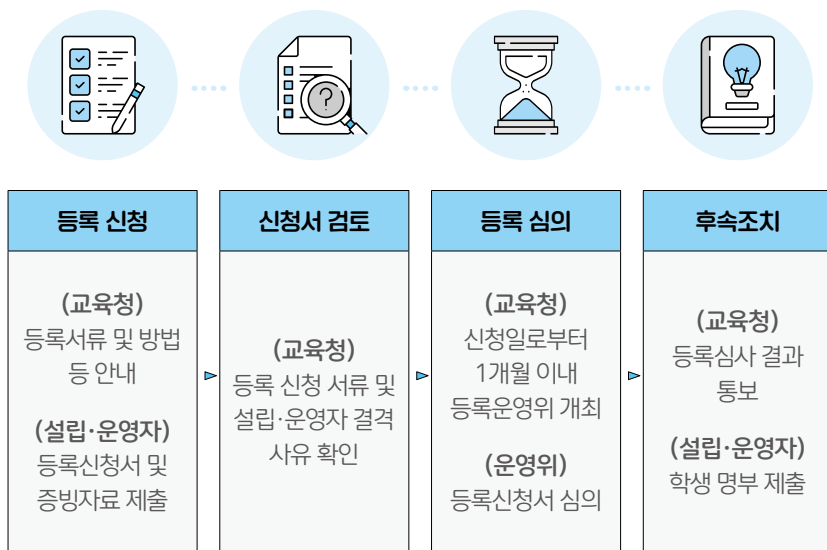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 등록 절차



- 그 밖의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



1) 등록 신청



근거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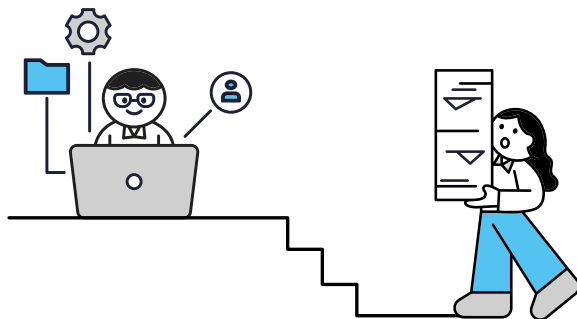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1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등록 서류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서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 제출
-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교사·교지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교사 및 교지를 임치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II-2-1) 등록 신청-등록서류

Q 대안교육기관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A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며,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다만,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함.

Q 교육과정을 초-6년, 중-3년, 고-3년이 아닌 다른 기준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

A 대안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제 운영이 가능함. 다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교사의 기준면적>에 나온 학교급[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별 수업연한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치원 과정은 운영이 불가함.

따라서 <교사의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각 학급별로 학생수(총학생 정원) 별 면적을 산정하여 기준면적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Q 등록 제출 서류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제출하는지? [예. 학칙, 수업료, 교원자격 등]

A 「대안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 서류 중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등의 서류는 계획서이므로 등록 시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 후 교육 운영이 시작

된 후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
[근거: 「대안교육기관법」 제14조제2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9조].
만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즉시 해당 부분을 반영
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Q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치(정원) 기준이 있는가?

A 「대안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은 등록 신청 시설 등이 제출한 교직원 배치계획서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의 교원이 배치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Q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대안교육기관 대표자의 이름이 같아야 하는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校舍)를 확보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하므로 설립·운영하려는 자 이름으로 계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Q&A

Q 임대차계약 없이 해당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A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설비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② 사용 기간이 명시된 '사용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무상사용 허가서 등)'의 확인이 필요함

Q 안전 공제사업 또는 보험 가입 없어도 기관 등록 신청 가능한가?

A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은 법정 의무사항임. (근거: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의2).

가급적 등록 신청 당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등록 이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 등록증 발급 후 일정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함.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없이 교육 운영 시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의2 위반으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

Q 소유 및 임대차계약 한 교사·교지가 압류된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며, 교사·교지는 교수·학습에 적합해야함. 압류된 교사, 교지는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있으며, 안정적 활용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감은 이 점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서 검토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등록신청서 검토

-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Q&A

II-2-2) 신청서 검토

Q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대안교육기관법」 제6조에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설립·운영자의 동의(〔별첨 1〕 서식)를 받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거나, 설립·운영자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Q 등록신청서 검토 시 현장실사를 해야 하는지?

A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급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설비 등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등록 심의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3항, 제9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6조

○ 등록 심의

- 교육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 (등록 심사 기준 예시 별첨3. 참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위원 7~9인으로 구성
-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은 부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대안교육 전문가가 과반 차지

*1.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관계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 포함)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운영

-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가능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척, 회피, 기피해야 하며, 해촉 가능

제척 |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신청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이나 설립·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

회피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기피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불가

해촉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4) 등록 후 후속 조치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5항

○ 후속 조치

- 교육감은 등록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등록 후 교육감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
-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기재된 명부



Q&A

II-2-4) 등록 후 후속조치

Q 등록 이후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A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학생명부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함.

같은 조 제6항에서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소재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 명부를 최소 1년에 1회 이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변경등록

1) 변경등록 사항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4항

○ 변경등록 사항

- 대안교육기관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신청

등록사항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교사·교지 소유 및 임차사항 등



※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등록 절차 없이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대안교육기관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취소 가능

2) 변경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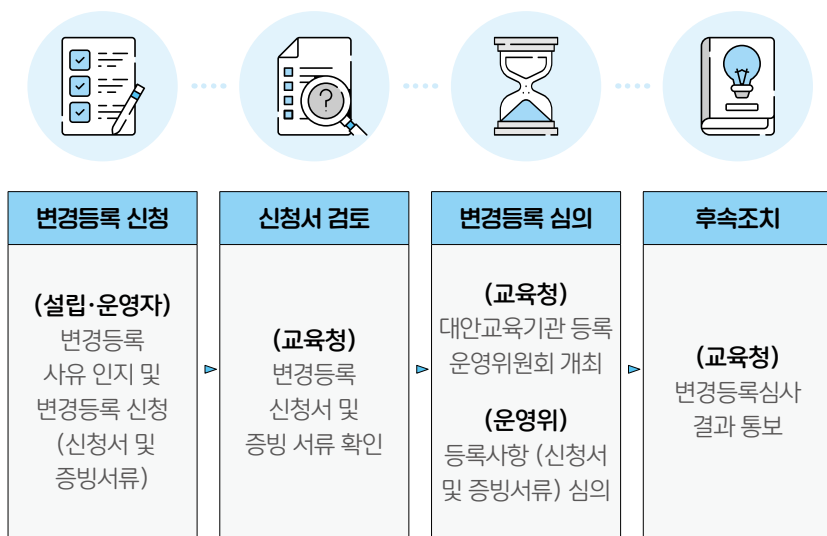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항, 제6항



○ 변경등록 절차



- 그 밖의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

II-3 변경등록

Q&A

Q 변경등록 사항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A 교육청에서 등록 당시에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던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함. 예를 들어, 경비 및 유지방법 관련 서류에 수업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관에서 수업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이 필요함. 또한 교직원 배치계획서 상에 과목별, 직종별 교원 정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관에서 교원 정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이 필요함.

Q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배치가 자주 바뀌며, 수업료도 매년 인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모두 변경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A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4항에서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4항에서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해 등록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기관이 교직원 배치, 경비 및 유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육청에서는 매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모든 대안교육기관이 일괄적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별첨7. 서울교육청 사례 참고]

Q 대안교육기관 학생 명부가 변동된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A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1항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변경등록을 해야함. 다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생명부'는 등록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

Q 편입이나 기타 이유로 재학생 수 변동시 변경등록을 매번 해야 하는지?

A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1항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변경등록을 해야함. 다만, 재학생 수는 등록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

4. 등록 취소

1) 등록 취소 요건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7조제1항

○ 등록 취소 요건

- 대안교육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우(당연 취소)
- 등록 시 제출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당연 취소)
-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등록 취소 절차 및 후속조치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4조

○ 등록 취소 절차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 교육감은 등록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 취소 여부 심의
- 등록 취소 시 교육감은 취소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또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안내
- 그 밖의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의 절차·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



II-4 등록 취소

Q 등록 이후 학생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한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 학생명부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기관이 학생 명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법」 제2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Q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등록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구체적인 의견청취 대상, 세부 절차 및 방법, 횟수 등은 등록을 취소하려는 대안교육기관의 상황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의견 청취 서식의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의견제출서 양식(별첨 2) 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Q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등록 취소를 해야 하는지?

A 학생 모집 계획이 없고 재학생도 0명인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청에서는 등록 시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임. (근거: 「대안교육기관법」 제7조제1항제2호)

5. 폐쇄 신고

1) 폐쇄 신고 신청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8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폐쇄 신고서

-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쇄 신고서에 폐쇄 사유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필요
 - ▶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 서류
 - ▶ 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2) 폐쇄 신고 절차 및 후속조치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8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폐쇄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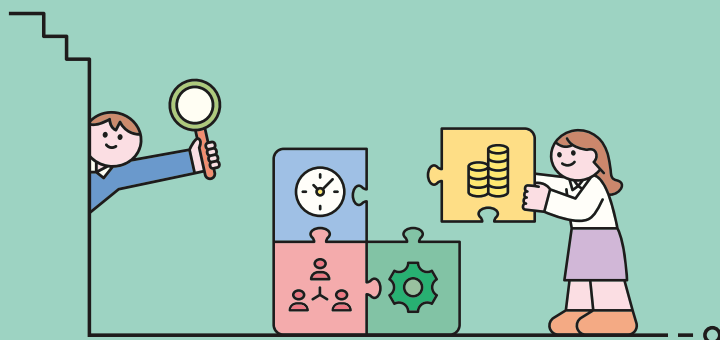
-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신고 후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 마련
- 그 밖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





대안교육기관 운영

1. 안전 관련 책무
2. 아동학대신고 책무
3. 취학의무 유예
4.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5. 수업료
6. 회계 운용
7. 교원의 자격



1. 안전 관련 책무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의2

○ 안전조치

-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Q&A

III-1 안전조치

Q 대안교육기관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련 시설]에 가입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련시설' 및 '단체'의 가입대상

●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영어체험센터, 외국어교육원 등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시설

● 청소년활동안전공제(단체)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그 밖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추천하거나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단체

2. 아동학대신고 책무



근거 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보호조치

-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기관별 역할
 - [교육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에서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 요청
 - [시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안내 → 기관별 교육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대안교육기관 등] 기관장 및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결과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가. 이수기간 : 매년 1.1 ~ 12.31. (1시간 이상 이수)

나. 교육대상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제20호,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

다. 교육방법 : 기관별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방법 및 콘텐츠는 매년 공문을 통해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안내 ('25년 안내 공문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1615, '25.4.2.)

라.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마. 결과제출 : 기관 → 교육(지원)청 → 교육부로 결과제출

※ 결과제출 양식 및 방법은 관련 공문으로 별도 안내

Q&A

III-2 아동학대신고 책무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지?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음.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답변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자료에서 발췌함]

3. 취학의무 유예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제10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

○ 취학의무 유예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음

○ 취학의무 유예 절차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의무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준용

신청	심의	후속조치
(보호자)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 유예 신청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학생 인적사항 통보	(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위원회) 취학 의무 유예 여부 심의	(보호자) 결정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읍·면·동의장,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 보호자,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유예를 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의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

○ 재취학 절차

-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취학하려는 학교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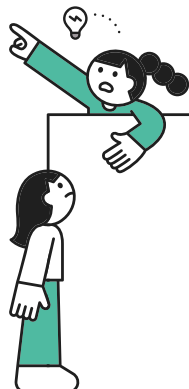
Q&A

III-3 취학의무 유예

Q 취학 의무 유예 신청 절차는?

A 취학 의무 유예를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원적교)에 직접 방문하여 취학유예 신청이 필요함. 신입생의 경우에도 취학년도 1월 1일부터 입학기일 전일까지 배정받은 학교에 취학 유예 신청을 해야함.

이때 학생의 보호자는 유예 신청서와 함께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 또는 취학 의무 유예희망자 인적사항(대안교육기관에서 원적교로 통보하는 자료)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가 승인됨.



Q 매년 유예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가?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취학의무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14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운영위원회

-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교원 대표 위원 및 학부모 대표 위원으로 하고, 구성 비율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학칙으로 정함

*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재·개정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급식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교원(敎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 운영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가능
- 그 밖의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규정



III-4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Q&A

Q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A 「대안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임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시도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임기 1~2년).

Q 학생이 아직 모집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교원 대표 위원과 학부모 대표 위원은 포함되어야 함(근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학생 모집 이후 구성·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수업료

1) 수업료 책정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수업료 의미

-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의미

○ 수업료등 금액 및 납부 필요사항

-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

2) 수업료 반환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제15조제3항 및 제4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제11조

○ 반환사유

-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반환기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수업료등 반환

● 수업료등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업료등을 일 단 위로 계산한 금액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수업료등의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1) 교육시작 전	이미 낸 수업료등 전액
		2)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나 기 이전	이미 낸 수업료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 까지	이미 낸 수업료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교육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등의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 하는 경우	1) 교육시작 전	이미 낸 수업료등 전액
		2) 교육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 의 반환 대상 수업료등(가 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 상 수업료등을 말한다)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등 전 액을 합산한 금액

비교

- ① 위 표에서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란 수업료(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징수된 총수업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하고, 입학금의 경우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 동안의 총수업일을 말한다.
- ② 위 표에서 “총교육시간”이란 수업료등의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한다.
- ③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 으로 한다.
- ④ 납부한 수업료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각각의 징수기간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업료등의 금액에서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 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III-5-2) 수업료 반환

Q 주로 학부모들의 출자금으로 교사(敎舍)를 마련하는 대안교육 기관의 경우 탈퇴 가정 발생 시 즉시 반납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 반납 방법에 대해 대안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A 「대안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수업료, 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반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그 외의 학부모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 따라서, 출자금 반납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 학부모에게 수업료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한지?

A 「대안교육기관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이 수업료 등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업료 미반환 각서를 쓰게 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판단됨.



6. 회계 운용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제16조

● 예산안 및 결산 내역 공개

-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함

Q&A

III-6 회계

Q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과 대안교육기관의 회계를 분리해야하는지?

A 「대안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안교육기관 회계 구분에 대한 기준은 없음. 다만,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등을 받아 운영되고(근거: 「대안교육기관법」 제15조), 예산안 및 결산 내역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점을 고려할 때(근거: 「대안교육기관법」 제16조), 대안교육기관 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인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Q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결산 자료는 즉시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의 범위는?

A 현행 「대안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예·결산 자료의 공개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결산 관련 자료를 누구나 열람 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7. 교원의 자격

1) 자격요건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제17조제1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제12조

○ 교원의 자격요건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 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 사례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 연수 이수 실적과 사회활동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 면접, 수업 시연 등을 통해 교사 자격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람

-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제17조제2항, 제19조

○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당연퇴직 처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원의 자격)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7.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III-7 교원 자격 및 결격사유

Q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근로 기준을 적용받는지?

A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란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이거나 ②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혹은 ③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한다. 대안교육기관은 설립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 근로기준도 적용받지 않음.

Q 교원은 강사, 봉사자로도 구성 가능한가?

A 각 기관의 교원은 「대안교육기관법」 제1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용, 구성할 수 있음.

Q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2조 교원의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란 제2호 및 제3호의 자격기준과 일부 다른 경우를 의미함. 예를 들어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된 교육기관 연수 이수 실적과 사회활동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의미함.

Q 교원의 결격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폭력, 마약 등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기관별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의 임용권을 가진 설립·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임.

IV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2.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3. 지도·감독



1.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12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8조

○ 개요

- 주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주기: 5년

- 활용방법: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조사내용

-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현황

-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사방법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가능

2.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의2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의2

○ 지원 근거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추가 지원 대상

- 교육감 및 지자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교육감-지자체 상호 협의체 구성·운영

- 교육감 및 지자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 교육행정협의회 등 기존 교육청-지자체 간 협의기구 활용 가능

○ 그 밖에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지원계획 수립, 경비지원 내용 및 방법, 지도·감독*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별첨5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예시 참고)
 - * 지원 경비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규정 포함

⚙️ 시도 조례 상 경비지원 관련 지도감독 규정(사례)

• 서울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교육기관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위탁교육기관이 지정해제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Q&A

IV-2 경비 지원

Q 교육 프로그램, 안전 공제 가입, 급식 경비 외 다른 경비의 지원이 가능한지?

A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4호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근거로, 시도 조례 규정 또는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지도·감독

1) 지도·감독 실시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20조의2

○ 지도·감독

- 교육감 및 지자체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
 -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따라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는지 교육청에서 정기점검 필요
 - ※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별첨4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자료 참고
 - 점검 실시 후 기관의 교육·운영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가능
 - ※ 근거 : 「대안교육기관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심의 가능
 - 교육청별 등록운영위원회 운영규정(또는 운영계획) 중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안교육기관 교육·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하고, 등록심사 기준에 준하여 심의(별첨3 참고)
-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 검사 가능
 - ※ 단,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2) 시정명령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20조

○ 시정명령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 대안교육기관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Q&A

IV-3-1), 2)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Q 대안교육기관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 시정 기간 내 시정 대상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에 대한 허용 여부는?

A 현행 「대안교육기관법」과 동법 시행령에 시정 기간 내 대안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 제한 여부에 대한 기준은 없음. 다만, 학생, 교직원 등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 완료 전까지 해당 시설·설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과태료



근거 조항

「대안교육기관법」 제24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4조

○ 일반 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 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의미

※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

○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대안교육기관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30	50	100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경우 1) 1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3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6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1) 30 2) 50 3) 100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30	50	100





부록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약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2025. 7. 22.][법률 제20664호, 2025. 1. 21., 일부개정]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 2.“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6.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업료 등)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②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회계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원의 자격) ①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7.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당연퇴직)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제21조(청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명칭)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2. 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20664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50호, 2025. 7. 15., 일부개정]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教授)·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법인 또는 단

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으로 한다.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개설 연월일
3. 학생 정원
4. 시설·설비 현황
5.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교사 및 교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의 절차·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서류
2. 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나.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 등을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⑦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2[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③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2.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급식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4호에 따른 교원(敎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
2.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의 제출 서류
3. 제1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5650호, 2025. 7. 15.>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의견제출서[예시]
3.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 기준[예시]
4. 대안교육기관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5.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예시]
6. 2022 개정 교육과정 검정도서 공통 검정기준
7.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공고



별첨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첨 3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 기준(예시)

※ 제시된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 기준(예시)은 여러 시도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임.

구분	심사 항목	심사 내용
1. 기관운영	1-1. 인적 기준	①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유무
		② 교원의 자격 기준 준수 및 결격사유 유무
		③ 교원 인원(수)의 적정성
	1-2. 등록 불가 기준	① 대안교육기관 등록의 적합성
	1-3. 학칙	① 대안교육기관 학칙 제정 여부
		②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의 적정성
	1-4. 재정운영	① 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
		② 수업료 등의 적정성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공공성
		② 교육과정의 독창성 및 체계성
		③ 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
		④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2-2. 학생 안전교육 계획 수립	①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3. 시설·설비	3-1. 교육시설·설비	① 교사(校舍) 기준면적 확보
		②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소유 및 임차 여부
		③ 다양한 학습 공간 및 교구 확보
		④ 숙박시설 운영의 적정성* * 운영 기관만 해당
		⑤ 건축물*의 안전·소방·위생 기준 준수 * 교사·교지·숙박시설

별첨 4

대안교육기관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제시된 대안교육기관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예시)는 여러 시도의 대안교육기관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임.

구분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1. 기관운영	1-1. 학칙	① 학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1-2.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심의 여부	☐ 적정 ☐ 부적정
	1-3. 교육시설	① 교육시설 및 설비 확보 - 시설·설비 등 등록요건에 대한 내용 변경 여부	☐ 준수 ☐ 미준수
		② 시설 안전점검 확인 - 소방 관련법 준수 여부 -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준수 ☐ 미준수
	1-4. 조직 운영	① 법령상 등록 불가 시설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② 기관 명칭 사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③ 등록 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확인 여부	☐ 준수 ☐ 미준수
		④ 취학의무 유예학생명단 원적교 통보 여부	☐ 준수 ☐ 미준수
		⑤ 수업료 반환 규정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⑥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조직 운영의 적절성 - 대안교육 전담 부서·담당자 배치 - 교직원 업무분장 조직 여부 등	☐ 적정 ☐ 부적정
		⑦ 교육활동 사고 대비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 조치 여부	☐ 준수 ☐ 미준수
	1-5. 교직원	① 교원 자격 충족 여부	☐ 준수 ☐ 미준수
		② 교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	☐ 확인 ☐ 미확인
		③ 교직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준수 ☐ 미준수
		④ 교직원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 적립) 가입 여부* * 근무 기간 1년 경과한 교직원 대상	☐ 준수 ☐ 미준수
		⑤ 교직원 연수 실태	☐ 준수 ☐ 미준수

구분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2. 교육과정 운영	2-1. 교육계획	① 등록서류와 교육과정 운영의 일치 여부	☐ 일치 ☐ 미일치
		② 교육 계획 수립 및 학사일정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2-2. 교육과정 다양성	①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 기본교과·대안교과·현장체험학습 등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 확보 ☐ 미확보
		② 기관 특성화 대안교육 교과 편성 운영 현황 - 학생의 요구와 특성 반영	☐ 운영 ☐ 미운영
		③ 전인교육(창의력 개발, 인성 함양) 실시 여부	☐ 실시 ☐ 미실시
	2-3. 교육과정 중립성	① 교육과정의 중립성 및 공공성 여부 - 교육과정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지 여부 - 교육과정의 수업목표 및 수업 내용 등에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포함 여부	☐ 준수 ☐ 미준수
3. 교육활동 관리	3-1. 기록 관리	① 학생의 출결 관리 방법	☐ 준수 ☐ 미준수
		② 학생 성장 기록 유지·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3-2. 인성·생활 지도 안전·건강 교육	① 인성교육, 생활지도 운영 방법	☐ 적정 ☐ 부적정
		② 안전·건강 교육 운영 방법	☐ 적정 ☐ 부적정
	3-3. 학생 관리	①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활동 현황	☐ 적정 ☐ 부적정
		② 학교폭력 관리 현황	☐ 적정 ☐ 부적정
		③ 생활지도 현황	☐ 적정 ☐ 부적정
4. 회계 운용	4-1. 예산 집행	① 연간 예산안 작성 여부	☐ 작성 ☐ 미작성
		② 보조금 집행 적합성 및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③ 예·결산 내역 심의 여부* 및 홈페이지 공개 여부 *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 준수 ☐ 미준수
	4-2. 수익자 부담 경비	①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및 집행 절차	☐ 준수 ☐ 미준수

별첨 5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예시)

※ 제시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예시)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제지정) 공모 선정 세부 기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자료임.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자료	참고 사항
1. 교육환경 인적 환경	1.1.	① 상근교사 수의 적정성 (정량)	- 대안교육기관 상근 교사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재학생 학교방청소년 증빙 서류	- 상근교사 1인당 학생 수 (※ 기준일: 24.12.18. 기준) -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24.12.18.)의 재학생 수 - 재학생 수 증빙자료: 2024. 12. 18. 이후 발급된 학교방청소년 증명자료 - 상근교사 재직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2025. 1월 발급)
	1.1.	② 상근교사의 자격 여부 (정량)	- 대안교육기관 상근 교사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교사의 자격(1~4호)에 대한 증빙자료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2조 교원의 자격 중 1호~4호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교원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5년 근로계약서, 2025.1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③ 교원 역량 증진 계획 (정성)	사업계획서	- 교원에 대한 교육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교원에 대한 교육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가 주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는지 여부 - 교원에 대한 연수가 대안교육의 질적 향상(역량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자료	참고 사항
1. 교육환경	1.1. 인적 환경	④ 교원 필수 교육 계획 (정량)	• 사업계획서	• 교직원 의무 연수 ①학교 폭력 예방, ②심폐소생술(실습 포함), ③성범죄 예방, ④이동학대 예방, ⑤안전교육, ⑥마약 및 약물예방
		⑤ 대안교육기관 운영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정량)	• 사업계획서	• 학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물적환경	① 시설의 안전위생점검 계획 수립 (정량)	•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2025년 시설 안전 위생점검 계획(소방, 전기, 가스, 재난안전, 급식, 위생(교실 복도, 화장실 등), 기타)	• “안전 계획” 안에 비상연락망, 지휘체계 분야별 점검 주기 반드시 포함 • 조리 시설에 대한 주기적 위생점검 실시 여부 • 기타 시설 안전과 관련한 대책 여부
		② 시설 화재 및 교육활동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정량)	• 대안교육기관이 가입한 화재보험증서 증명제출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보험증서 증명제출 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입증서 등	• 기관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 (유효기간에 25년 1월 전체를 포함해야 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입 여부 (유효기간에 25년 1월 전체를 포함해야 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입 문의 • 보험은 연단위로 가입하며, 특히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화상 체험 학습 시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과 다름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자료	참고 사항
1. 교육환경		③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 여부 (정량)	- 대안교육기관명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 (대내적-2가지) 기관 공식 문서 (공문, 기관 임학원서) 증빙 자료 - (대외적-2가지) 기관 홍보 사진 (간판, 홈페이지 화면) 증빙 자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 라고 쓸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이 라고 해야 함
	1.2. 물적환경	④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내부 게시 여부 (정량)	- 사업계획서 - 교부한 등록증을 대안교육기관 내부에 게시한 사진 (1~2장) 증빙 제출	-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대안교육기관 등록증의 교부 등) ③ 대안교육기관 설립 · 운영자는 교육감이 교부한 등록증을 잘 보이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 잘 보이는 위치 : 기관 입구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 게시 - 등록증 종이: 내부 게시로 함
	1.3. 학생 지원 체계	①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수업료 감면 제도 운영 (정량)	사업계획서	- 교직원 자녀, 다자녀, 교인 등 면제 할인은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에 미포함 - 사업 계획서 내용 중 입학금, 수업료에 관한 부분은 학기 중 사업계획서(입학금, 수업료 상 항) 내용 변경이 불가하며 수업료(입학금)를 상향하여 운영할 경우 2025년 성과평가 시, 감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자료	참고 사항
1. 교육환경	1.3. 학생 지원 체계	②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입학금 감면 제도 운영 (정량)	• 사업계획서	• 교직원 자녀, 다자녀, 교인 등 면제 할인은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에 미포함
		③ 수업료 등 반환기준 안내 (정량)	• 사업계획서 • 가정통신문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캠퍼스(또는 기관 내 외부 게시) 증명 제출	• '수업료 등'이라 함은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뜻함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2. 교육과정	2.1 교육 과정 운영	①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 (정성)	• 사업계획서	• 기관의 교육철학이 공공성에 부합되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기관의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안 교육과정이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편성되어있는지 여부 • 기관이 사회적 약자,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여부 • 학생의 경제적 수준, 건강, 성별, 인종, 종교, 이념, 학습 능력 등에 따른 차별 여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자료	참고사항
2. 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	21	② 교육과정 운영에 구성원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참여 보장 (정상)	• 사업계획서	1학기 및 2학기 교육과목 편성에 있어서 학생 또는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제도적 장치, 단편적 수단 • 제도적 장치란 주기적으로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을 뜻함 • 단편적 수단이란 설문 조사, 건의함 운영 등을 뜻함 • 구성원 참여 보장 수단 : 학부모회의, 교사회의, 교육과정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과 공유 관련 회의, 학생 자치회(학생회) 등
	22	③ 학생에 대한 교과 등 평가 및 통지 계획 (정상)	• 사업계획서	• 교과별 특성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 교과별 평가에 대한 내용이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 계획이 적절한 경우 1. 교과별 평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2. 평가 계획의 공개(홈페이지, 학부모에게 계획 통지) ※ 통지계획이 적절한 경우 1. 교과별 평가 결과를 통지서(학생별 교과 평가 결과서) 발송(안내) 2. 교과별 평가 결과 전체를 토대로 학생(학부모) 상담을 통한 통지 3. 교과별로 평가 결과를 학생 상담 후, 학부모에게 통지 등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자료	참고 사항
2. 교육과정	2.1 교육 과정 운영 운영	④ 학생 성장 기록 및 관리 계획 (정성)	• 사업계획서	• 학생 성장에 대한 기록이 체계적(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 - 학생 성장은 학습, 정서, 관계, 건강 등을 아우름 - 학생생활기록부, 성장일지, 논문, 작업 포트폴리오 등
	2.2. 교육 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의 학습자 적합성 (정성)	• 사업계획서	• 교육과정이 학생 특성(연령 등)과 잘 부합하는지 여부 • 교육과정이 교육 목적(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과 부합하는지 여부 • 교육과정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습 수업의 경우 학생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지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교육과정의 독창성 (정성)	• 사업계획서	• 공교육과 구별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여부 • 시대적·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새롭게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여부 • 교육과정의 주제·내용이 참신한지 여부 • 새롭게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노력이 있는지 여부
		③ 교육과정의 체계성 (정성)	• 사업계획서	• 교육의 목적, 목표, 방법 및 내용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교육 방법 및 내용이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 교육 평가 결과가 교육 목적, 목표, 방법, 내용 등에 환류되고 있는지 여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자료	참고 사항
2. 교육과정	2.2. 교육과정 편성	④ 교육과정의 내용 및 방법 적합성 (정성)	• 사업계획서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여부 •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과정의 균형 잡힌 편성 여부 • 건강한 가치관 형성 등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여부 • 학생의 소질·적성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여부 • 교육과정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권, 성인지, 환경, 시민의식, 지속가능성과 미래 등)를 지향하는지 여부
		⑤ 외국어 교과 편성 비중 (정량)	• 사업계획서	• 외국어 교과의 적절한 수준 학년별 전체 교육 시수 중 외국어(영어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 이내(*초등 20%, 중등 25%, 고등(후기 청소년 포함) 30%) • 일부 교과가 내용과 무관하게 외국어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 (예시) 해당 외국어 교과 외의 수업을 외국어로 진행하는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체육, 미술 수업 등) • [참고] 외국어 등에 편중된 경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2.3. 안전 교육	① 학생 대상 안전교육 계획 수립 (정량)	• 사업계획서의 학생 대상 안전 교육 계획	• 학생 대상 7대 안전 교육 - ① 생활안전교육, ② 교통안전교육, ③ 학교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④ 재난안전교육, ⑤ 직업안전교육, ⑥ 약물(마약 포함)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⑦ 응급처치 교육(실습포함) ※ ⑥ 약물(마약 포함)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시, 마약 교육 꼭 포함해야 함 ※ ⑦ 응급처치교육(실습포함) 시 실습을 포함해야 함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자료	참고 사항
3. 재정의 공공성	3.1. 재정 공공성	① 수업료 내역의 적절성 (정량)	• 사업계획서 (가장 수업료가 높은 과정으로 기재)	• 대안교육기관의 수업료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 2025학년도 수업료(예정액)을 기준으로 함 • 가장 수업료가 높은 과정을 대표로 기재 → 초등/중등/고등 과정 중 가장 수업료가 높은 과정(ex 고등) 수업료 기재 • 연간 수업료 총액을 12개월로 나눠서 기재함 • 사업 계획서 내용 중 입학금, 수업료에 관한 부분은 학기 중 사업계획서(입학금, 수업료 상향) 내용 변경이 불가하며 수업료(입학금)를 상향하여 운영할 경우 2025년 성과평가 시, 감점
		② 입학금 내역의 적절성 (정량)	• 사업계획서 (과정별로 다른 경우 입학금이 가장 높은 과정으로 기재)	• 대안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 과정별로 다른 경우 입학금이 가장 높은 과정으로 기재 → 초등/중등/고등 과정 중 가장 입학금이 높은 과정(ex 고등) 입학금 기재 → 단, 조합 가입비 등 과정 졸업 또는 수료 후 전액 반환하는 경우는 입학금으로 보지 않음 • 2025학년도 입학금(예정액)을 기준으로 함 • 진급, 또는 상위 과정 진학을 위해 내는 비용도 입학금으로 볼 • 사업 계획서 내용 중 입학금, 수업료에 관한 부분은 학기 중 사업계획서(입학금, 수업료 상향) 내용 변경이 불가하며 입학금(수업료)을 상향하여 운영할 경우 2025년 성과평가 시, 감점
감점사항	사업계획서 매수 초과 시			(초과 매수)x-1

점검 영역	점검 항목
1. 헌법 이념과 가치의 존중	1-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1-2.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1-3.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1-4.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1-5.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2. 교육의 중립성 유지	2-1.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2-2. 특정 국가, 인종, 민족, 정당, 종교, 인물, 상품, 기관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남녀의 역할, 장애, 직업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23.1.)에서 일부 발췌

별첨 7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공고

서울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 - 15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공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

가. 등록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서울특별시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개인포함)

나.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등록 시	◆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고시」별지 1호 서식 (붙임1, 붙임5(예시) 참조)
	◆ 대안교육기관 학칙	기관별 양식 (붙임2 참조)
	◆ 경비와 유지방법(재정운영 계획서)	「고시」별지 2호 서식 (붙임1 참조)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고시」별지 3호 서식 (붙임1 참조)
	◆ 교직원 배치계획서	「고시」별지 4호 서식 (붙임1 참조)
	◆ 교육시설·설비 등 현황 - 시설평면도 - 건물 소방 정기 점검 결과표 (※결과표 보유 시 제출)	「고시」별지 5호 서식 (붙임1 참조)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등록 시	◆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 - (교지 소유 시) 토지등기부등본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승낙서 사본 ※ 사용기간 및 위치 명시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 신분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 (시설·단체) 고유번호증(사본), 단체 정관 (임원명시),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 단체 등) 법인 또는 단체 정관의 ‘설립목적’에 “대안교육” 운영과 관련된 목적 명기
	◆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 (개인)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의 “동의서”란 서명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임원 전체 동의서, 임원 신분증(사본) - (시설·단체) 회원명부(정관 등)에 명시된 임원 전체 동의서, 임원 신분증(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개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임원 전체 동의서 - (시설·단체)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임원 전체 동의서	결격사유, 범죄경력 및 토지, 건물 등기사항 확인 (붙임1 참조) 「고시 및 기타」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위임장 - (개인, 법인, 시설·단체) 대표자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붙임1 참조) 「고시 및 기타」 서식 · 위임장 서식
운영 시작 후 (1개월 이내)	◆ 학생 명부	「고시」 별지 7호 서식 (붙임1 참조)

2. 변경 등록

가. 변경등록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중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등록 하려는 기관

나.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 대안교육기관 변경신청서	「고시」별지 6호 서식 (붙임1, 붙임5(예시) 참조)
	◆ 변경등록 관련 “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 서명부 제출 ※ 학칙에 근거한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확인	‘대안교육기관 학칙’ 제21조(대안교육기관 운영 위원회) 심의사항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기타」위임장 서식 (붙임1 참조)
위치 변경	◆ 변경 사항이 반영된 학칙	기관별 양식 (붙임2 참조)
	◆ 교육시설·설비 등 현황 - 시설평면도, - 건물 소방 정기 점검 결과표	「고시」별지 5호 서식 (붙임1 참조)
	◆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통)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 (교지 소유 시) 토지등기부등본 ※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승낙서 사본 ※ 사용기간 및 위치 명시	
학칙 변경 (명칭, 목적, 정원 등)	◆ 변경 사항이 반영된 학칙	기관별 양식 (붙임2 참조)
설립자 변경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통) 신분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대표자 신분증(사본) - (시설·단체) 고유번호증(사본), 단체 정관, 대표자 신 분증(사본)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설립자 변경	◆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 (교지 소유 시) 토지등기부등본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승낙서 사본	
	◆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 (개인)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신청서의 “동의서”란 서명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임원 전체 동의서, 임원 신분증(사본) - (시설·단체) 회원명부(정관 등)에 명시된 임원 전체 동의서, 임원 신분증(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개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임원 전체 동의서 - (시설·단체)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임원 전체 동의서	결격사유, 범죄경력 및 토지, 건물 등기사항 확인 「기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1 참조)
그 외 변경	◆ 그 외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3. 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방법

• 신청인

- 등록: 서울특별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개인·법인·단체)
- 변경등록: 변경등록하려는 대안교육기관

• 접수 기간: 2025. 5. 28.(수) ~ 2025. 6. 4.(수) 13: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 기간 준수 ※ 시설 현장방문 기간: 2025.6.2.(월)~6.13.(금)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7층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 접수방법: 설립·운영자 방문 접수

※ 위임자 접수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른 위임장 제출(붙임1 참조)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시

4. 일정 및 처리 절차

일정	구분	주체	내용
2025. 5. 2.~ 2025. 6. 4.	공고	교육감	2025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안내 (공고)
2025. 5. 28.~ 2025. 6. 4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설립·운영자	등록 및 변경등록 서류 제출
2025. 6. 5.~ 2025. 6. 25.	제출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록 심의	교육감	서류심사(제출서류의 적정성, 결격사유 조회 등) 현장조사(교사 기준 및 시설·설비 기준 확인 등) 교육과정(대안교육 목표의 적절성·공공성 및 교육과정의 독창성·체계성 등) 검토
		등록운영 위원회	등록 및 변경등록 여부 심의
2025. 7. 1. 이후	등록 및 변경등록 완료	교육감	등록증 교부
		설립·운영자	(운영 시작 후 1개월 이내) 학생 명부 제출

※상기 일정은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참고 및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등록 및 변경등록 불가
※ 불임의 인적 기준, 시설·설비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교육청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 취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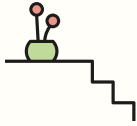
6.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대안교육·학교박청소년지원팀
(☎ 02-3999-538, 484)

※ 불임 1. 고시 및 기타 서식

2. 대안교육기관 학칙(작성예시)
3.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내
4. 대안교육기관 주요 Q&A
5.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작성예시)

개발진



기획 및 개발

<교육부>

- 나현주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과장
- 박민영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사무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최인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센터장
- 전현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전문연구원

집필(별첨5 자료 제공)

- 권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 노재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무관
- 김명심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무관

검토

<시도교육청 담당자: 가나다 순>

- 김광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실장
- 김성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무관
- 김영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 김현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무관
- 남기화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무관
- 노재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무관
- 박금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무관
- 박연주 경상남도교육청 주무관
- 박용탁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송창용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 신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무관
- 이미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 이정아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무관
- 이지혜 전라남도교육청 주무관
- 조정희 충청북도교육청 주무관
- 주다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주무관
- 하상형 경기도교육청 주무관



인쇄일 | 2026년 1월 22일

발행일 | 2026년 1월 22일

발행처 |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인쇄처 | (주)계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길 41

Tel : (02)725-5216 / Fax : 738-9571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044-415-2229)
